

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당첨자 안내문

‘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’ 당첨을 축하드립니다.

당사는 당첨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제52조(입주대상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신 분들은 소명 기간내에 당첨자 삭제 및 계좌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※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서류검수가 등기우편 제출로 진행됩니다. 당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■ 자격 검수 확인 일정 안내

구분	당첨자 자격 검수	정당 계약
일정	09.15(화) 까지 / 당사 견본주택으로 발송	09.22(화) ~ 09.27(일)
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	당첨자 중 자격 검수 완료 자
방법	등기우편 접수	견본주택 방문 계약(예약제 운영)
장소	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견본주택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0 (동천동 901)	
견본 주택 유의 사항	• ‘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’ 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당 계약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,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(동반입장불가) • 방문 예약제는 당첨자 본인 인적 사항으로만 ‘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’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본인을 제외한 대리인은(배우자포함) 당첨자로 예약 후 대리인 방문 가능(당첨자 신분증 지참) • 예약 접수 고객 외 방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. • 코로나19 감염증상(발열37.3도 이상, 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이 있거나, 마스크 미 착용 하신 분 등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• 견본주택 방문 시,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당첨자 자격검수를 견본주택 내방 진행으로 공고하였으나 코로나-19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(등기우편접수)으로 진행하며 일정에도 일부 변경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등기우편 발송 전 대표번호로 확인전화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. 서류누락으로 인한 미비서류 재발송 등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• 예비당첨자의 자격 검수 및 계약과 관련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.	

■ 유의사항

- 검수 서류 : 당첨자 별 자격 검수 서류는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홈페이지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
- 유의 사항 : 1. **상기 일정을 참고하시어 당첨자 자격검수 서류 빠른 등기 발송을 부탁드립니다.**
 - 2. 모든 서류는 ‘**상세표기**’로 발급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내역,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등)
 - 3. 모든 증빙 서류는 **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.08.19) 이후 발급** 분만 해당 됩니다.
 - 4. 당첨자 자격 검수 시 **안내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청** 할 수 있습니다.
 - 5. 당첨자 자격 검수를 위해 제출 하신 서류는 **자격 확인 후 반환되지 않습니다.**
 - 6. 질병관리 본부,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및 지침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**일정, 접수 방법 등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**
- 문의 전화 : 1566-1982(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)

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일반공급 서류 안내

■ 일반공급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일반공급 (1순위 당첨자)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,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-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만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* 만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·비속	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)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/직계비속	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군 복무기간 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규칙」 제4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- 무허가건물확인서 - 소청·처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상기 필요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.08.19.)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
※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내역,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등)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

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

특별공급(기관추천, 다자녀 가구, 노부모 부양) 서류 안내

■ 특별공급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•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만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* 만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기간이 명시 된 것
일반 (기관추천) 특별공급		○	해당기관장의 추천서		※ 해당기관에서 당사에 통보한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
다자녀 가구 특별공급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서류에 한함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입양의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)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	○	기본증명서(상세)	자녀	출생일자 관련 확인 필요시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)
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/자녀	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/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- 무허가건물확인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점 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※ 상기 필요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.08.19)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내역,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등)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

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 특별공급 신혼부부 서류 안내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·비속	• 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※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* 만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* 만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8.19.)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 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10년 이상 군 복무기간이 명시 된 것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(발급처:국민건강보험공단) (※성명, 주민번호, 과거변동 내역 포함 하여 발급)
	○		소득증빙서류	세대원 전원	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무주택세대구성원,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) ※ 아래 '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안내' 참조
		○	기본증명서(상세)	자녀	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전체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(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 서류에 한함)
	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- 무허가건물확인서 - 소형·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 확인서 등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안내

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하며,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재직증명서 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,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*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* 표준(기준)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[국민연금 미가입자]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본) *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사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 사업자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,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장당계약 진행시 별도 서식에 작성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(소득금액 증명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)	① 접수 장소

※ 상기 필요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.08.19)이후 발급 분만 해당됩니다.
※ 모든 서류는 '상세표기'로 발급(과거 전입사항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내역, 세대원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등)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